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정승현 의원)

의안 번호	2410
----------	------

발의연월일 : 2013. 6. 13.

발 의 자 : 김동수·김철진·박영근·신성철·이민근·
정승현(6인)

개정이유

- 현재 운용되고 있는 안산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민간위탁 사무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 함(안 제1조 ~ 제2조)
- 민간위탁 사무의 적용범위, 대상사무의 기준 및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제5조)
- 수탁기관의 선정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 ~ 제11조)
- 수탁기관의 의무와 위탁의 취소, 수탁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및 처리사항의 감사와 성과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제19조)

개정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 : 담당부서 검토의견 접수 후 입법예고 예정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명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안산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안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5조제9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 사무)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예술·영상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주민편의시설 관련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교통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근로자복지·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교육·외국어마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적격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기여도
4. 그 밖에 선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되 선정결과는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전문가, 관련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② 심의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위탁기관,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 수탁기관의 의무·준수사항,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

④ 시장의 소관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11조(위탁기간의 연장) ① 수탁기관은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 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 그 결과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의 연장 방법과 절차, 기준 등에 대하여는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및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4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관련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았을 때
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기관이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계약 취소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6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감사 결과는 필요시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여 수탁기관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민간위탁 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및 제5항 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안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안산시 문화원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안산시 성호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항 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안산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 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안산시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안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안산시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4항 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안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4항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

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안산시 여성정보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및 제14조 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9조 제3항 중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⑮ 「안산시 좋은마을 만들기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⑯ 「안산시 로보캡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⑰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 「안산시 상록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⑲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 「안산시 화정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㉑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㉒ 「안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 「안산시 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 「안산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안산시 안산문화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

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㉞ 「안산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㉟ 「안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㊱ 「안산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㊲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 제3항 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7조 제3항 중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㊳ 「안산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㊴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㊵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㊶ 「안산시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㊷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2항 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㊸ 「안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13조 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㊹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중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410
----------	------

제안년월일 : 2013. 7. 9.
제안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수를 상향조정하고 관계공무원의 비율을 하향조정하고자 함.
- 위탁기간의 연장에 있어서 수탁기관 평가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하여 서류제출기간을 90일로 하고,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사위원수의 상향조정 및 관계공무원의 비율을 하향조정하고자 함 (안 제8조)
- 위탁기간의 연장에 있어서 수탁기관 평가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하여 서류제출기간을 90일로 수정하고자 함(안 제11조)
-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수정하고자 함 (안 제7조, 제16조)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2항중 “제출하여야 하며” 를 “제출받아야 하고” 로 한다.

제8조제2항중 “6명 이상 9명 ” 을 “9명 이상 11명 ” 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중 “3분의 1” 를 “4분의 1” 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60일” 를 “90일” 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를 “제1항제5호에” 로,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60일 전에” 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60일 전에” 로 “통보
하여야” 를 “제출하여야” 로 각각 한다.

신 · 구조문 대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생 략)</p> <p>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계획서를 <u>제출하여야 하며</u>, 필요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되 선정결과는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p>	<p>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원안과 같음)</p> <p>② ----- ----- <u>제출받아야 하고</u> ----- ----- ----- -----</p>
<p>제8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생 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u>6명 이상 9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전문가, 관련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u>3분의 1</u> 이내로 한다.</p> <p>④-⑦ (생 략)</p>	<p>제8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원안과 같음)</p> <p>② ----- <u>9명 이상 11명</u> ----- ③ ----- ----- ----- <u>4분의 1</u> ----- ----- ④-⑦ (원안과 같음)</p>
<p>제11조(위탁기간의 연장) ① 수탁기관은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u>60일</u> 전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11조(위탁기간의 연장) ① ----- ----- <u>90일</u> ----- ----- ----- ② (원안과 같음)</p>
<p>제16조(위탁의 취소) ①-② (생 략)</p> <p>③ <u>시장은 제1항제5호에</u>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u>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60일 전에</u> 그 사유를 서면으로 <u>통보하여야</u>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생 략)</p>	<p>제16조(위탁의 취소) ①-② (원안과 같음)</p> <p>③ <u>제1항제5호에</u> ----- <u>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60일 전에</u> --- --- <u>제출하여야</u> ----- ----- ④ (원안과 같음)</p>